



2023. 9. 5.(화)
9월 1회차

면 정 회 보

진 교 면

목 차

[총무부서]

- 2023년 하동군 청년드림카 지원사업 홍보 요청 1
- 2023년 하동군 도시청년 하동 살아가기 참여 숙박업소 모집 홍보 요청 1
- 부패신고창고 알림 2
- 재활용쓰레기 분리배출 방법 안내 3
- 2023년 치매조기검진사업 안내 4
- 관내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처방 및 제조기관 안내 4
- 코로나19 4급 감염병 전환 및 2단계 조치시행 5

[맞춤형복지부서]

- 2023년 정부양곡 가격 변경 안내 6
-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사업 안내 6
- 미서훈 독립운동가 발굴 홍보 및 제보접수 안내 6
-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중단 안내 7

[산업경제부서]

- 2023년 반려동물 등록비용 지원사업 신청 안내 8
- 2023년 실외사육견 중성화 지원사업 신청 안내 9
- 「농지법」 개정에 따른 임대수탁사업 대상농지 요건 변경안내 10
- 2023년 10월 농기계 순회교육 및 무상수리 일정 수요조사 10
- 수도권 병해충 확산 대비 방제 철저 11
- '23년 가을철 및'24년 봄철 산불감시원 선발 12

[민원재무부서]

-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안내 13
- 2023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홍보 협조 14

[붙임 1] 농지법 개정에 따른 임대수탁사업 대상농지요건 변경 안내문 1부.(별송)

[붙임 2] 사실조사 관련 붙임서류 4부.

[붙임 3] 공고문 1부.

[붙임 4] 개별공시지가 의견서 1부.

총무부서

1 2023년 하동군 청년드림카 지원사업 홍보 요청 이현경(880-6263)

- 사업명 : 2023년 하동군 청년드림카 지원사업
- 사업기간 : 2023 ~ 2025년
- 접수기간 : 2023. 3. 3. ~ 예산 소진 시까지
- 지원대상
 - 하동군에 거주 및 생활하는 19~45세 이하 청년
 - *사업 신청일 기준 하동군 거주(전입일) 등록자
 - *당해연도 기준 19세 이상 ~ 45세 이하
 - 청년이 대표이거나, 청년직원이 50% 이상인 법인
- 지원내용 : 차량 임차료 50% 지원(월 40만원 한도 내), 최대 2년
 - 제외차량 : 외제차

2 2023년 하동군 도시청년 하동 살아가기 참여 숙박업소 모집 홍보 요청 이현경(880-6263)

- 사업명 : 2023년 하동군 도시청년 하동 살아가기 숙박업소 모집
- 사업내용 : 관내 숙박업소 이용활성화 및 시스템 구축
 - 도시청년 하동 살아가기 운영(보조)사업자와 1:1매칭
 - 선정된 숙박업소는 도시청년 하동살아가기 참여자를 위한 숙소 제공
- 모집대상 : 도시청년 하동살아가기사업 희망 숙박업소
 - 하동군 소재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으로 등록된 시설
 - 참가자의 안전(화재, 도난방지 등을 위한 보험가입)을 보장할 수 있는 시설
- 신청 및 제출서류
 - 접수기간 : 2023. 8. 29.(화) ~ 9. 8.(금) 한
 - 접수방법 : 접수기간 내 방문접수 또는 이메일 접수
 - 제출서류 : 참가신청서, 현황사진,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, 사업자등록증, 통장사본
- 문의처 : 하동군 청년정책부서(055-880-7153)



2023년 더 청렴한 하동

군민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.



지킬수록 빛나는 청렴
청렴으로 가득한 밝은 하동

군민 곁에서 매일 더 청렴한 하동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



부패신고창구

- 청렴포털 부패·공익 신고 (www.clean.go.kr)
- 하동군 청렴감사부서 (055-880-2035)
- 부패공익신고 상담 (국번없이 1398, 110(무료))
- 청렴신고함 (하동군청 내 설치)

4 재활용쓰레기 분리배출 방법 안내

권은정(880-6264)

- 배출일시 : 매주 목요일 오전 6시까지
 ※ 대형폐기물의 경우 화, 목요일 수거
- 수거품목 : 종이류, 유리병, 캔류, 합성수지 및 플라스틱류
- 배출장소 : 마을별 쓰레기 집하장
- 배출방법

종류	배출방법	비고
플라스틱, 페트병	- 내용물을 비우고 라벨 제거 후 투명비닐에 담아 분리배출	
캔, 유리병		
비닐류		
신문지, 상자류	-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끈으로 묶어 배출	
폐형광등	- 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면사무소에 배출	
의류	- 폐의류 전용 수거함에 배출 - 없을 경우 투명 비닐에 담아 배출	
폐건전지	- 면사무소 배출	
종이팩	- 내용물 비우고 물로 헹군 후 압축하여 배출	
폐가전	- 면사무소 방문하여 대형폐기물 스티커 구입 후 배출 - 하동군 대형폐기물 배출시스템	1599-0903 (대형 폐가전 무료방문수거)
기타 종량제에 담기지 않는 폐기물	www.hadong.go.kr/waste.web	

5 2023년 치매조기검진사업 안내

권은정(880-6264)

- 검진시간 : 평일 오전 9시 ~ 오후 5시(오후 12시~1시 제외)
- 검진대상 : 60세 이상 하동군 거주 어르신
- 검진장소 : 하동군 치매안심센터(황천면 소재)
※ 매주 화요일 보건소에서 검진가능
- 유의사항 : 사전예약제 실시(055-880-6867), 신분증 지참
※ 읍면별 10명이상 검진 시, 마을 출장검진 가능

6 관내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처방 및 제조기관 안내 권은정(880-6264)

- 원스톱진료기관, 재택치료 지원 종료되었으나 확진자 지원위해 치료제 무상 공급
- 처방기관

지정번호	기관명	주소	전화번호
1	우리들병원	금남면 섬진강대로 957	883-7575
2	하동군민여성의원	하동읍 중앙로 115	882-8787
3	하동중앙의원	하동읍 연화길 6	883-0222
4	하동현대의원	하동읍 중앙로 15	882-7377
5	성심의원	하동읍 시장2길 15-1, 2층	883-4000
6	김병수의원	하동읍 중앙로 17	884-0760
7	양지의원	하동읍 중앙로 18	884-1233
8	백의원	진교면 민다리길 69	884-2115
9	진교외과의원	진교면 진교중앙길 11	884-7582
10	청해의원	진교면 진교중앙길 13	882-8540
11	세종의원	옥종면 옥종중앙길 60-1	883-6175

- 조제기관

지정번호	기관명	주소	전화번호
1	서울미보약국	하동읍 중앙로 33	884-2888
2	메디팜행복약국	하동읍 중앙로 15	882-1253
3	새진교약국	진교면 진교중앙길 14-8	884-8042
4	시장약국	진교면 진교중앙길 17	882-8883
5	박약국	옥종면 옥종중앙길 60-1	882-8033
6	우리들병원	금남면 섬진강대로 957	883-7575

2023. 8. 23.

질병관리청

코로나19 4급 감염병 전환 및 2단계 조치 시행

8월 31일부터



1 방역 조치 (고위험 환자 보호를 위한 실내 마스크 착용, 선제검사, 격리 권고 유지)

분야	현행	감염병 등급 조정(2급→4급, 8.31.)
마스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일부 유지 (입소형 감염취약시설, 병원급 의료기관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유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방역상황 모니터링 지속 및 전문가 자문 이후 권고 전환
선제검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의료기관 입원환자, 보호자(간병인) 및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선제검사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선제검사 필요시 실시 (유증상, 다수인 접촉 등 필요시 PCR 또는 RAT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의료기관 입원환자, 요양병원·시설 입소자 선제검사 현행 유지 감염취약시설 종사자, 보호자(간병인)는 필요시 실시 (유증상, 다수인 접촉 등 필요시 PCR 또는 RAT)
감염취약 시설 보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접종력에 따른 조건부 외출·외박 허용 접촉 대면면회시 취식허용 (방역수칙 준수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접종력에 관계없이 외출·외박 허용 면회 취식 유지 (방역수칙 준수) 대면면회 시 면회객 사전음성 확인 권고

2 의료대응 체계 (신속한 중환자 치료를 위해 상시 지정 병상 운영 및 검사비 지원 지속)

분야	현행	감염병 등급 조정(2급→4급, 8.31.)
진단-검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선별진료소·PCR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선별진료소(PCR) 운영 지속 (위기단계 하향 전까지)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의료기관 PCR-RAT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의료기관 유료 검사체계 전환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먹는치료제 처방 대상 (외래PCR, 외래RAT, 입원PCR) (외래 RAT 지원은 위기단계 하향 전까지) - 응급실·중환자실 재원환자 (입원PCR, 입원RAT) 등 건보 지원
외래/재택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원스톱진료기관 운영/재택치료 지원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종료
병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지정병상 및 상시병상 중심 운영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유지

3 국민 지원 체계 (치료제·백신, 중증 환자의 입원 치료비 일부 등 고위험군 지원체계 유지)

분야	현행	감염병 등급 조정(2급→4급, 8.31.)
치료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정부 일괄 구매 무상공급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유지
예방접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누구나 무료접종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유지
치료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전체 입원환자 지원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중증 환자 고액치료비 일부 지원
생활지원/유급휴가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중위소득 100% 이하 가구 종사자수 30인 미만 기업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종료

4 감시 체계 (표본감시 체계 전환 및 다층 감시체계 운영)

분야	현행	감염병 등급 조정(2급→4급, 8.31.)
감시-통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전수감시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표본감시(양성자·하수감시 등 다층 감시체계)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주간 단위 통계 발표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주간 단위 감시기관 내 발생동향 및 변이 바이러스 유행 양상 발표

맞춤형복지부서

1 2023년 정부양곡 가격 변경 안내

임미라(880-6293)

○ 지원대상별 할인가격

구분			할인가격	
			당초	변경
수급자용	차상위계층 등		10,000원/10kg	8,000원/10kg
	기초생활 수급자	교육급여 주거급여		
		의료급여 생계급여	2,500원/10kg(현행유지)	
기초생활보장시설용			25,080원/20kg 12,650원/10kg	20,000원/20kg 10,000원/10kg

○ 적용기간 : 2023. 9. 1.부터(9월신청분) ~ 2023. 12. 31. 공급물량까지

2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사업 안내

정숙경(880-6292)

- 지원대상 : 독립유공자 및 유족
- 지원내용 : 진료 및 약제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(비급여 의료비 제외)
- 예산액 : 금1,000,000원(금일백만원)
- 신청기간 : 예산 소진시까지
- 신청방식 : 면사무소 방문 접수
- 제출서류 : 신청서, 본인부담내역이 기재된 영수증, 통장사본

3 미서훈 독립운동가 발굴 홍보 및 제보접수 안내

정숙경(880-6292)

- 내용 : 독립운동을 하였지만 후손이 현존하지 않거나, 증거자료 부족 등으로 서훈을 받지 못한 독립운동가 발굴
- 신청(제보)기간 : 2023. 9. 1. ~ 2024. 3. 31.
- 신청장소 : 면사무소 맞춤형복지부서
- 제출내용 : 독립운동가 성명, 생년월일, 출신지, 활동내역, 증거자료 등

4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중단 안내

정숙경(880-6292)

- 2023. 8. 31.부터 코로나19가 '4급 감염병'으로 전환됨에 따라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중단
- 다만, 4급 전환 시행일 전일(8. 30.)까지 양성확인통지 문자를 받은 자는 격리해제일 이후 90일 이내 생활지원비 신청 가능
- ※ 현재 예산 조기 소진으로 2023. 2월 신청자부터 생활지원비 미지급 상태로 예산 확보하여 신청순으로 순차적 지급할 예정

산업경제부서

1 2023년 반려동물 등록비용 지원사업 신청 안내 김수영(880-6274)

- 사업목적 : 반려동물 등록률을 높이고, 유실·유기동물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반려동물 등록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
- 지원대상 : 하동군내 거주하는 반려견(묘) 소유자
 - * 고양이 동물등록 시에도 등록비 지원가능
- 사업량 : 가구당 2마리 이내 (총 43마리 이내)
- 사업비 : 마리당 4만원 이내(등록수수료 1, 재료비 2, 시술비 1)

구분	등록비용	지원금	비고
신규로 내장형 등록하는 동물	40,000원	30,000원	
인식표 또는 외장형에서 내장형으로 변경등록하는 동물	30,000원	22,500원	

- 신청기간 : 2023. 9. 8.(금) 한
- 사업내용 : 동물의 등록에 소요되는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장착 및 등록비용 지원
 -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함
 - 반려견 소유자가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고령자(만65세 이상)인 경우 등 저소득 및 취약계층에 우선 지원
 - 외장형 인식표를 내장형으로 변경 시 지원가능
 - 하동군 관내 대행업체(병원)에서만 동물등록 가능
- 동물등록 : 하동읍소재 동물병원(사랑동물병원, 하동동물병원, 박학규동물병원)에서 등록 가능
- 사업진행 : 신청서 제출 → 보조사업자 선정 → 동물등록 → 보조금 교부
- 제출서류 : 신청서 ※ 면사무소 비치

- 사업목적 : 농촌지역 실외 사육되는 등록대상 동물(개)의 중성화 수술 지원을 통한 유·실·유기 동물 발생 예방
- 지원대상 : 농촌지역에서 동물등록동물(개)을 반려의 목적으로 사육하는 소유자 (군·관내, 실외에서 기르는 5개월령 이상의 실외견)
- 우선지원 :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고령자(만65세 이상)인 경우 우선지원
(1순위: 기초생활수급자, 2순위: 차상위계층, 3순위: 고령자(만65세 이상))
- 사업량 : 12마리
 - 사업비 범위 내 암·수 사업량 변경 추진 가능
- 사업비 : 4,800천원(보조 4,320 자부담480)
- 사업단가 : 400천원/암, 200천원/수
 - 보조 90%, 자부담 10%
- 사업내용 : 농촌지역에서 실외 사육*하는 등록대상동물(개)의 중성화 수술 비용 및 제반 비용**(가구당 5마리 이내로 지원)
 - * 실외사육견 : 농촌 지역에서 마당 등 실외에 묶어 놓거나, 울타리 안에 풀어 놓고 기르는 소유자가 있는 5개월령 이상의 등록대상동물(개)
 - * 마당개가 중·대형 혼종(믹스)견인 경우 우선 지원
- 신청기간 : 2023. 9. 8.(금) 한
- 제출서류 : 신청서 ※ 면사무소 비치

3

「농지법」 개정에 따른 임대수탁사업 대상농지 요건 변경안내

김수영(880-6274)

- 개정목적 : 헌법과 농지법에 따른 자경 및 농업경영 이용 의무 강화
- 개정내용 : 한국농어촌공사에 임대 수탁할 수 있는 농지 요건 개정
 - (기존) 임대수탁사업의 수탁요건에 보유기간 기준이 없어 취득직후 위탁가능
 - (개정) 개인이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공사에 위탁가능

구분	기존	개정
위탁요건	개인이 소유한 농지	개인이 소유한 농지 중 3년 이상 소유한 농지

- ※ 한 필지를 여러 명이 공유로 소유한 경우 공유자 모두가 소유기간 3년 이상을 충족하
여야 임대수탁사업 참여가 가능
- ※ 취득시점은 부동산등기부등본 서류를 통해 증빙가능
- ※ 상속농지는 소유기간 3년 적용 없이 공사에 위탁 가능
- 시행일자 : 2023. 8. 16.
- 기타문의 사항 : 한국농어촌공사 하동남해지사(055-883-5112)

[붙임1] 안내문 1부(별송)

4

2023년 10월 농기계 순회교육 및 무상수리 일정 수요조사

류현정(880-6273)

- 10월 수요조사 기한 : 2023. 9. 15.(금)한, 선착순 접수
- 운영방법
 - 현지도착 : 당일 오전 10시
 - 운영인력 : 농기계교관(2 ~ 3명)
 - 무상수리 : 농기계 무상점검 및 정비수리(부품당 20,000원 이하)
 - 농기계집결장소 : 거점지역 지정
 - ※ 당초 리별로 운영되었으나, 상황에 따라 마을별 신청 가능
 - 수리 가능한 농기계 : 경운기, 관리기, 기타 소형농기계 및 간단한 용접
 - 농기계안전사용 및 보관요령교육 병행 실시

○ 협조사항

- 농기계는 세척 또는 청소 후 수리 집결장소로 이동
-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축광야광스티커 “추돌주의”, “안전운전” 부착
- 경운기, 트랙터 부착 방향지시등 신청 가능(재료 소진 시까지)

○ 수요조사서식

- 9월 운영일정 : 2023. 10. 4. ~ 10. 26. 중 화 ~ 목

마을명	대표이장	연락처	집결장소	예상인원 (명)	예상대수 (대)	신청일자(일)		
						1순위	2순위	3순위
예) 고룡리	홍길동	010-1234 -5678	남양 마을회관	17명	20대	20일	21일	22일

○ 9월 운영일정

날짜	대상	장소	마을
2023. 9. 5.(화) 10:00	월운리	월운마을회관	월운, 갑정
2023. 9. 8.(금) 10:00	고룡리	남양마을 정자	평당, 구곡, 남양

5 수도권 병해충 확산 대비 방제 철저

류현정(880-6273)

- 배 경 : 전국적인 집중호우와 폭염 등 고온다습한 날씨로 벼 병해충 발생이 증가
- 홍보사항 : 벼 결실기 시점임을 감안하여 벼 이삭도열병, 잎집무늬마름병, 흰입마름세균 벼알마름병, 흰등멸구, 흑명나방 등 병해충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찰 하고 적절히 자가 방제를 하도록 농가에 안내

6**‘23년 가을철 및 ‘24년 봄철 산불감시원 선발** 정세용(880-6275)

- 접수기간 : 2023. 9. 4.(월) ~ 9. 12.(화)
- 접수장소 : 진교면사무소
- 근로기간 : 2023. 11. 1. ~ 2024. 5. 15.(산불방지대책기간)
- 선발인원 : 13명(초소 감시원 1, 기동 감시원 12명)
- 채용절차
 - 서류심사 : 신청 제한 없을 시 통과[붙임]
 - 직무수행평가 : 체력검정(30점)+직무수행(40점)+필기시험(30점)
- ※ 합산 기준 70점 이하인 경우 선발 제외
 - 면접시험 : 전문지식, 자세, 인성 및 협력성 등 평가하여 직무수행평가 합산 상위 득점자 순 최종 선발
- 제출서류 : 신청서 등 ※ 면사무소 비치

1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안내

김보경(880-6285)

- 법적근거 : 「주민등록법」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 27조 1항
 -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매년 1회 이상 사실조사 실시·조치 하여야함
- 추진기간 : 2023. 7. 17.(월) ~ 11. 10.(금)
- 조사자 : 각 마을 이장 및 담당 공무원
- 조사내용 :
 -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확인
 -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등 조사
 -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 등록된 자의 재등록 ※출생미등록 아동 중점 조사
- 조사대상 : 모든 세대 확인이 원칙이나, 다음 사항 중점조사
 - ① 복지취약계층의 주민등록지 실거주 여부
 - ② 사망의심자의 생존 여부
 - ③ 장기 미인정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실태조사
 - ④ 100세 이상 고령자의 생존 여부
 - ⑤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조사
- 조사 대상 및 방식 : [붙임 1~4] 참고
 - 1단계 : 비대면-디지털 조사(7.24. ~ 8. 20.)
 - 2단계 : 방문조사(9.1. ~ 10. 10.)
 - ① 이장 방문조사(9.1.~9. 24.) : 9. 24.까지 조사 결과 및 관련 자료 일체 주민등록 담당자에게 반납
 - ② 담당마을 공무원 개별조사(9.25.~10.10.) :
이장 방문조사 결과 실거주-주민등록사항이 다른 자에 대하여 담당마을 공무원 개별조사 후 사실조사서 작성
- 자진신고자 과태료 경감
 - 적용기간 : 2023. 7. 17. ~ 11. 10.
 -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 신고하는 자는 과태료 1/2 경감
- 협조사항
 -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수칙 준수 철저
 - 주민등록 사실조사 명부에 의거 거주사실 확인(명부 별도 배부)
 - 개인정보 포함 문서 지참시 유출·분실 등 관리 주의
 - 조사 결과 및 관련 자료 제출
 - ① 이장 : 2023. 9. 24(일) 까지
 - ② 담당공무원 : 2023. 10. 10. (화) 까지

[붙임 2] 사실조사 관련 붙임서류 4부.

- 2023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이 2023년 9월 4일부터 9월 25일까지 실시함
- 열람
 - 기 간 : 2023년 9월 4일 ~ 9월 25일
 - 장 소 : 군청 민원과, 토지소재지 읍·면 민원실, 군 홈페이지
 - 열람내용 : 토지 지번별 m²당 가격
- 의견제출
 - 기 간 : 2023년 9월 4일 ~ 9월 25일
 - 제출사항 : 토지이용상황 등 토지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적절한 의견가격 제시
 - 제출자 :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
 - ※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대상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, 합병, 지목변경 등의 토지이동이 있는 필지만 대상임
 - ※ 2023년 7월 1일 기준 지가열람부 1부.(민원재무부서 비치)

[붙임 3] 공고문 1부.

[붙임 4] 개별공시지가 의견서 1부.

(앞쪽)

1 유선/방문 조사 대상 구분 방법

일반 세대	1단계		⇒	2단계	
	비대면-디지털 사실조사	참여 불참		⇒	방문조사 불요
중점조사 대상 세대	x		⇒	방문조사	⇒

- 중점조사 대상 세대에 포함 ⇒ 방문 조사

[중점 조사 대상 세대란?]

- ① 복지취약계층이 포함된 세대,
- ② 사망의심자가 포함된 세대,
- ③ 장기 미인정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이 포함된 세대
- ④ 100세 이상 고령자 포함 세대
- ⑤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포함 세대

- 비대면-디지털 사실조사에 미참여 ⇒ 방문 조사
- 중점조사 대상 세대에 미포함되며(일반 세대),
비대면-디지털 사실조사에 참여 ⇒ 방문 조사 불요

2 방문 조사 진행

- (기 간) '23. 9. 1. ~ 9. 24.
- (유의사항) '3 조사 방식' 참고 및 이하 사항에 유의하여 조사

- 사실조사 시 이·통장증이나 사실조사원 증명서를 패용 또는 제시 * 조사 종료 후에는 사실조사원 증명서 반납
[개인정보 보호] - 개인정보 포함 문서 지참 시 유출·분실 등 관리 주의 - 개인정보 포함 문서* 유출·분실 시 담당 공무원에게 즉시 연락하고, 문서 회수를 위한 현장 확인 등에 적극 협조 * 복지취약계층 명단, 사망의심자 명단, 장기결석·미취학아동 명단 등
[긴급 상황 대처] - 안전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 및 담당 공무원 연락 후 탄력적으로 현장 대응
[코로나19 등 감염병 방역] - 방문 주소지에 감염의심자 혹은 확진자의 거주가 확인된 경우, 거주지 외부에서 폐문 상태로 통화를 통해 조사 시행 -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의심되는 경우 방문 자제, 확진되었을 시 담당 공무원에게 연락(담당 공무원은 대체인력 투입 검토)

3 조사 방식

- 사실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**질문 방식에 주의**
 - 기존 세대명부에 기재된 사람의 거주 여부를 묻는 것이 아닌, **실거주자의 응답 내용을 바탕으로 세대명부를 확인**

[질문 예시]

- (세대명부를 보고) **여기 살고 계신 분이 A, B, C가 맞나요?**
 ☞ **잘못된 예** (세대명부에 기재된 사람의 거주 여부를 묻는 방식임)
- (조사 대상자에게 먼저) **여기 살고 계신 분이 누구누구인가요?**
 → (A, B라고 답할 경우) 세대명부 상에는 C도 거주한다고 기록되어 있는데, 이에 관해 혹시 잠시만 설명해주실 수 있을까요?
 ☞ **옳은 예** (실거주자의 응답 내용을 세대명부와 비교하는 방식임)

- 출생미등록 아동 등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나 실제 거주 중인 주민이 있다면 즉시 담당 공무원에게 인수인계
 - 특히, 아동용품이 다수 보임에도 아동인 세대원이 없다면 유의
 - ※ ‘제주 세자매 사건(세 자매가 출생 미신고된 채 20년 넘게 지내다가 발견)’이나 ‘수원 세모녀 사건(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가 불일치 하는 세모녀가 적절한 복지혜택을 받지 못해 극단적 선택)’ 등 주민등록이 올바르게 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한 사례가 다수 발생한바, 조사 시 유사 사례에 특히 유의
- 중점조사 대상 세대 방문 시 다음 사항에 유의
 - 최대한 **예의를 갖추어** 조사, 이른 아침, 늦은 밤 등의 방문을 가급적 피하되, 부재 시 **요일 및 시간을 달리하여(오후, 저녁 등) 재방문**
 - 장기 미인정결석·학령기 미취학아동 거주 세대 : 유학, 질병과 같이 취학의무를 면제 혹은 유예받을 수 있는 사유 확인 시 **취학의무 면제·유예 신청 제도*** 안내
 - * 제도 관련 자세한 사항은 취학 예정 혹은 취학 중인 학교에 문의토록 안내

4 조사 이후 조치

- **'23. 9. 24.까지** 조사 결과 및 관련 자료 일체를 담당자에게 제출 및 반납

1 분실 사실 보고

- 이·통장은 사망의심자 명단 분실 사실을 인지하는 즉시,
 - 관할 주민센터의 담당자에게 보고하고 시·군·구 → 시·도를 거쳐 행정안전부 주민과로 보고

2 현장 확인

- 주민센터 담당공무원과 이·통장이 동행하여 분실 시점부터 동선을 역추적하여 현장 확인

3 경찰서에 분실신고

- 현장 확인 후 분실된 사망의심자 명단 등을 찾지 못할 경우 관할 경찰서에 분실 신고하고 습득된 분실물 등에 대한 확인 철저

4 개인정보 유출¹⁾ 통지(「개인정보보호법」 제34조제1항)

-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유출사실을 정확히 인지하고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알려야 함

※ 「표준 개인정보보호지침」 [별지 1호] 서식 활용

개인정보 유출 통지(법 제34조제1항)

1. 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
2. 유출된 시점과 그 경위
3. 유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
4. 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조치 및 피해 구제절차
5.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

- (통지 시기) 개인정보처리자는 유출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 지체없이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하고,
 - 여기서 '지체 없이'란 '5일 이내'를 의미(「표준 개인정보보호지침」 제26조제1항)
- (통지 방법) 통지는 서면·전자우편·팩스·전화·문자전송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을 이용한 개별적 통지 방법 활용

5 대책 마련

-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피해현황 접수창구 마련 등

1) '유출'이란 고의·과실 여부를 불문하고 개인정보처리자의 관리 범위를 벗어나 개인정보가 외부에 공개, 제공, 누출, 누설된 모든 상태를 의미(개인정보보호법령 및 지침·고시 해설)

붙임3

사실조사서 서식

■ 주민등록법 시행령 [별지 제19호서식] <개정 2022. 7. 11.>

사 실 조 사 서						
등록기준지						
주소	세대주		전화번호			
조사 대상자	성명	주민등록번호		-		
	전입일자	세대주와의 관계				
조사 개요	조사이유	조사일시				
	조사결과					
조사 내용	현장방문	<input type="checkbox"/> 확인 <input type="checkbox"/> 미확인	※ 수도·전기·가스 사용여부, 우편수령 여부, 취사·가재도구 존재 여부 등 생계·숙식 여부를 확인			
	대상자인술	<input type="checkbox"/> 확인 <input type="checkbox"/> 미확인	※ 대상자 부재 시, 주민등록전산시스템상 대상자의 휴대전화기 등록된 경우 통화 여부·일시·조사내용 등 확인			
	참고인진술	<input type="checkbox"/> 확인 <input type="checkbox"/> 미확인	※ 이·통장, 주변 주민 등 면담 및 진술여부·일시·조사내용 등 확인			
	실거주자의 주민등록표 대조·확인	※ 실거주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재 인원을 대조·확인한 결과를 정확히 적으며, 용지가 부족하면 별지에 적어 첨부합니다.				
		성명	생년월일 (남/여)	실제 거주 여부	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등재	
				[]거주 []불거주	[]등재	[]미등재
			[]거주 []불거주	[]등재	[]미등재	
			[]거주 []불거주	[]등재	[]미등재	
			[]거주 []불거주	[]등재	[]미등재	
			[]거주 []불거주	[]등재	[]미등재	
	※ 실거주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재 인원이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조사하여 적고, 용지가 부족하면 별지에 적어 첨부합니다.					
종합의견	※ 조사방법 및 전입 이후 거주상태 등을 육하원칙에 따라 자세히 적되, 대상자 및 참고인의 진술을 확보한 경우에는 그 내용 및 진술인의 인적사항(성명, 주민등록번호 등)을 적습니다. (용지가 부족하면 별지에 작성하여 첨부합니다)					
					
					
					
					
					
확인	신고의무자	(서명 또는 인) 이 (통) 장		(서명 또는 인)		
조사자	소속	직급	직위	성명	(서명 또는 인)	
「주민등록법」 제20조제1항·제20조의2제1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라 위의 사실을 확인합니다.						
년 월 일						
읍·면·동장 귀하						
유의사항						
1. 사실조사서에는 신고의무자(세대주, 세대를 관리하는 자 등)의 확인이 있어야 합니다. 다만, 신고의무자의 확인을 받을 수 없으면 이 장이나 관계공무원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.						
2. 사실조사 시 관계 공무원은 「주민등록법」 제20조제8항에 따라 공무원증, 사실조사원 증명서 등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합니다.						
3. 정당한 사유 없이 사실조사를 거부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「주민등록법」 제40조제2항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.						

210mm×297mm[백상지(80g/m²) 또는 중질지(80g/m²)]

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안내 공고

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사한 2023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하고 있으니 기간내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열람

- 기간 : 2023년 9월 4일 ~ 9월 25일
- 장소 : 군청 민원과, 토지소재지 읍·면 민원실, 군 홈페이지
- 열람내용 : 토지 지번별 m²당 가격

- 의견제출

- 기간 : 2023년 9월 4일 ~ 9월 25일
- 제출사항 : 토지이용상황 등 토지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적정한 의견가격 제시
- 제출자 :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
- 제출처 : 군청 민원과, 읍·면 민원실, 군 홈페이지
- 제출방법 : 군, 읍·면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를 제출하거나 우편 또는 FAX 로 제출 및 인터넷 접수

- 의견제출에 대한 처리

의견이 제출된 토지가격에 대하여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합니다.

2023년 8월 30일

하 동 군 수

개별공시지가 의견서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
		의견제출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
의견제출인	성명(법인명)	생년월일(사업자등록번호)
	주소	
	전화번호	휴대전화번호
	전자우편	소유자와의 관계
대상토지	소재지 및 지번	
	지목	
	실제이용상황	
의견제출내용	열람지가 원/m ²	의견가격 원/m ²
	의견제출사유	

「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라 열람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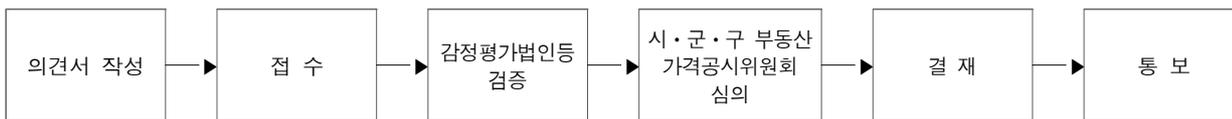
의견제출인

(서명 또는 인)

하 동 군 수 귀하

첨부서류	의견제출 관련 참고자료(참고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)	수수료 없음
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

처리절차



의견제출인

시장·군수·구청장